

2026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
1 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①,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

①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15~34세(1992~2011 출생자) 청년층 자살시도자

② 자살예방(정신건강복지)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서면 동의한 자

※ 다만,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 119 출동기록지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인정

※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서비스 동의 및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가 자살예방센터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 및 등록할 경우, 치료비 지원 가능

2 지원금액 및 기간

○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

○ 지원기간 : 2026년 예산 소진 시 까지

<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▶ (지원금액)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치료비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1인 한도액 내 지원 가능 다만,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, 개인별 잔여 한도와 관계없이 지원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
- ▶ (지원기간)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기준 6개월 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신청 가능

3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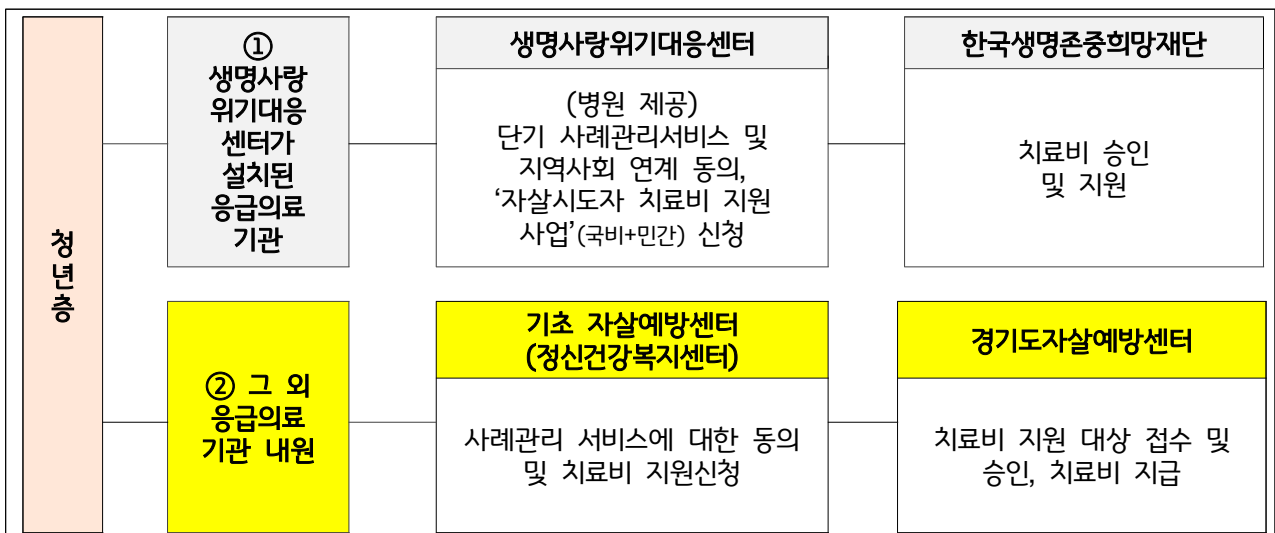
○ 지원항목 :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, 약제비 등

구분	내용	
지원 항목	외래 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정신건강의학과)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후 퇴원한 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지원○ (기타 진료과)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의 외래 진료비 지원* (예) 가스중독(자살수단)으로 인한 고압산소치료, 자해로 인한 흉터 치료, 추락으로 인한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 치료 등
	입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(정신건강의학과)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여 발

구분	내용	
	치료비	생한 치료비 ○ (기타 진료과)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에 따른 입원 치료비 ※ 응급실 내원일과 기타 진료과 입원일이 다른 경우,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
	약제비	○ (정신건강의학과) 자살시도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처방 전문의약품 ○ (기타 진료과) 자살시도로 인한 기타 진료과 처방 전문의약품
지원 제외 항목	○ 이번 자살시도와 무관한 기존 질환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	
	○ 코로나19 검사비	
	○ 종합심리검사 및 기타 심리치료비(개별심리치료, 놀이치료 등)	
	○ 간병비, 보호자 식대비, 응급후송비	
	○ 간이(수기)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	
	○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	
	○ 상급병실료 ※ 상급병실 입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지원금액 내 최대 7일까지 인정(단, 신청서에 상급병실 입원 사유 작성)	
	○ 각종 제증명료(소견서, 진단서 등 발급비), 전화 사용료 ※ 퇴원 후 자살시도로 인한 입원 치료비 신청 목적의 진단서·소견서 발급 시 제증명료 지원 가능(연 1회에 한함)	

4 신청절차

- 대상자 응급의료기관 내원 → 기초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및 치료비 지원신청
→ 광역센터 지원대상 접수·승인 및 치료비 지급



5 제출서류

- 치료비 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.
 - ※ 다만, 대상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을 제출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음.
-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미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.

구분		제출서류
추가 서류	신규 신청	1) 본인확인 서류(사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증, 청소년증, 외국인등록증* -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확인 서류로 제출할 경우, 제출일 기준 <u>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</u> *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자살시도자에 한해 지원 가능 2) 치료비 신청서 ([신규], [추가]) 3)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) 상병코드(KCD 코드, X60-X84)가 기재된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단서 또는 소견서 ※ 다만,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상병코드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응급실 초진기록지로 갈음할 수 있음 5) 진료비 영수증·계산서 6)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제3자 계좌로 지급 시)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(가족관계증명서) 1부, 제3자 신분증 사본 1부, 제3자 통장사본 필요
	추가 신청	※ 추가신청 시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서류 요건 충족. 단, 대상자 인적 사항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1) 치료비 [추가] 신청서 1부
	위임 신청	※ [신규] 또는 [추가]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다음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1) 대리신청자 본인확인 서류 사본 1부 2) 위임장 1부
	응급의료 기관에 내원하지 못한 경우	※ 응급실 수용 곤란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지 못하였고, 119 출동기록지 등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